

의안번호	2204563
의 퇴 인	주호영의원
회 답 일	2024. 10. 28.
추 계 번호	24B425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74억 9,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374억 6,100만원(연평균 274억 9,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유형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10조의5 신설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시행) 및 안 제10조의7 신설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본형	22,492	22,492	22,492	22,492	22,492	112,461	22,492
	협약형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5,000
추가재정소요		27,492	27,492	27,492	27,492	27,492	137,461	27,492

주: 1.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 및 사찰림에 대한 산림보전지불금은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산림청 계획에 따라 기본형 산림공익보전지불금 지급대상 면적(70,287ha) 및 지급단가(32만원/ha)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산림청 계획에 따라 협약형(공익기능 증진) 산림공익보전지불금 지급대상 단체 100개소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5 신설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시행)	산림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을 이행한 산림보호구역이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이하 “사찰림”이라 함)를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에 기여한 산림보호구역 또는 사찰림의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u>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u> (이하 “ <u>산림보전지불제</u> ”라 함)를 시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또는 사찰림 소유자에게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을 재원으로 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라 녹색자금으로 <u>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u> (이하 “ <u>산림보전지불금</u> ”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음(제2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u>상수원관리지역안의 산림보호구역</u> 은 한강수계관리기금·금강수계관리기금·낙동강수계관리기금·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각각 지급할 수 있음(제3항)	
	안 제10조의7 신설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자)	<u>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u> 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0조의5 제1항에 따른 <u>산림보호구역 또는 사찰림의 소유자</u> 로 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0조의5 신설(산림 공익 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시행), 안 제10조의7 신설(산림보전 지불금의 지급대상자)	○	• 산림청 제출자료 참고 -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소유자에게 산림보 전지불금 지급
		×	(사찰림 소유자에 대한 산림보전지불금)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 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찰림 소유자에 대해 해당 사찰림의 산림보호구역 지정 여부 와 무관하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국내 524개 사찰 ¹⁾ 이 87,114ha의 사찰림을 보유하고 있음(사찰 1개소당 평균 166ha 보유) - 다만, 산림보전지불금 지급대상 면적은 0.1 ~30ha로, 사찰 1개소당 평균 보유면적을 일 반화하기 곤란하여 현실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²⁾

1)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통사찰은 983개소(2024.9.9. 기준)

<전통사찰 현황: 시도별 및 종단별>

(2024.9.9. 현재)

시도별	시도별	사찰수	시도별	사찰수	시도별	사찰수
	서울특별시	60	울산광역시	11	전라북도	119
시도별	부산광역시	36	세종시	8	전라남도	99
	대구광역시	28	경기도	105	경상북도	172
	인천광역시	9	강원도	48	경상남도	105
	광주광역시	6	충청북도	84	제주도	12
	대전광역시	6	충청남도	75	계	983
	계	797	계	983	계	983
종단별	조계종	태고종	선학원	법화종	기타	계
	797	96	28	16	46	9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2) 참고로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찰림 33개소의 지급면적 490ha 및 지불금 157백만원을 바탕으로 1개소당 평균 면적 약 15ha 및 1개소당 480만원(=32만원/ha×15ha)으로 가정하고 이를 524개 사찰에 적용하는 경우, 사찰림에 대한 산림보전지불금은 2,515백만원으로 산출된다는 의견임 (=524개소×480만원/개소).

(다만 이 경우, 사찰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본형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는 사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산림청 계획에 따라 산림보전지불금 지급대상 산림보호구역 면적(70,287ha) 및 지급단가(32만원/ha)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찰림에 대해서도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찰 1개소당 평균 보유면적을 일반화하기 곤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 지급대상자 선별,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등 제도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시행(안 제10조의5 신설),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자(안 제10조의7 신설)

- 산림청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2022년부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 (법적근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21.11.30, 시행 '22.10.1)
 - (목적)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산림의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찰 33개소가 중복 계상되어 있음)

- (지급대상)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

※ [참고자료 1]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제도 및 지급 현황

□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유림 중 산림보호구역³⁾ 지정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경영활동이 제한되는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이하 “산림보전지불제”라 함)를 도입하고,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이하 “산림보전지불금”이라 함)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 (지급대상지) 사유림 중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⁴⁾

※ [참고자료 2] 2023년도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황('23년말 기준) 참고

- (지급유형)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전지불금은 기본형과 협약형으로 구분하여 지급 예정

－ (기본형) 산림보호구역 유지 → 산림보호 규제 이행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

－ (협약형) 산림보호구역 기능증진 → 기능증진사업 활동 비용 지급

- (준수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형상 및 기능 유지⁵⁾

3) 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4) 안 제10조의6(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지)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유림 중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2.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용 산지 중 사찰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5) 안 제10조의8(산림보전지불금의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산림보호구역 및 사찰림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산림청의 계획에 따르면 기본형 및 협약형 산림보전지불금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 등은 다음과 같음

[표 2] 산림보전지불금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 등

	기본형	협약형
지급대상자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소유자 등	
지급대상 면적 등	• 70,287ha(2만7천여 소유자) –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중 0.1ha 미만 및 30ha 초과 면적 제외 * 사유림 총 면적은 92,805ha('20년 기준, 3만여 소유자)로서 지급 구간(0.1~30ha)을 충족하는 면적	• 매년 100개소 – 마을, 단체 등이 공익기능증진 협약을 체결하여 가꾸는 일정 구역의 산림
지급단가	• 매년 32만원/ha – 임업직불금의 육림업 지급단가 최저단가 적용⁶⁾ – 산림청이 산림보호구역 내 입목가치, 임업소득금액, 국민지불의사 등을 분석하여 산출한 금액⁷⁾ * 면적 구간별 역진적 설계 없음	• 매년 5,000만원/개소 – 협약을 체결한 마을, 단체 등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산림청장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374억 6,1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6)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중 육림업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 (육림업)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
 – (지급면적) 3ha 이상~ 30ha 이하(농업법인 10ha 이상~50ha 이하)
 *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 (지급단가) ① 3ha이상~10ha이하: 62만원/ ② 10ha초과~20ha이하: 47만원/ ③ 20ha초과: 32만원

7)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산림보전지불제 가이드라인 마련」, 2022.11.
 – 용역수행기간: '22.5~11.
 – 도입근거(국내외 사례, 타규제지역과의 차별성), 제도설계(대상지, 대상자 등) 등

[표 3]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시행 및 산림보전지불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지급 유형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형 (산림보호구역 유지)	지급면적 (A, ha)	70,287	70,287	70,287	70,287	70,287	—
	지급단가 (B, 만원/ha)	32	32	32	32	32	—
	소계 (C=A×B, 백만원)	22,492	22,492	22,492	22,492	22,492	112,461
협약형 (산림보호구역 기능증진)	협약체결 단체수 (D, 개소)	100	100	100	100	100	—
	지급단가 (E, 백만원/개소)	50	50	50	50	50	—
	소계 (F=D×E, 백만원)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추가재정소요 (G=C+F, 백만원)		27,492	27,492	27,492	27,492	27,492	137,461

- 주: 1.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 및 사찰림에 대한 산림보전지불금은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산림청 계획에 따라 기본형 산림보전지불금 지급대상 면적(70,287ha) 및 지급단가(32만원/ha)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산림청 계획에 따라 협약형(공익기능 증진) 산림보전지불금 지급대상 단체 100개소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제도 및 지급 현황

(산림청 제출자료)

□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개요

- (법적근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21.11.30, 시행 '22.10.1)
- (목적)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산림의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임업직불제 구성 및 시행>

종류	임산물생산업 (^① 소규모임가· ^② 면적직접지불금)	육림업
정의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업진흥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
지급 대상산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산림경영계획 인가받고 육림업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
지급 대상자	< ^①소규모임가, ^②면적직불 >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원) • 농촌(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생산업 주업 기준* 충족하는 자 * 주업기준 -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 생산업 종사(농업법인 10ha) - 연간 임산물판매액 1,600만원 이상(농업법인 8,000만원) - 연간 임산물 생산 경영투입비 800만원 이상(농업법인 4,000만원)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 종사 • 농촌(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육림업 주업기준* 충족하는 자 * 주업기준 - 주소지와 동일 시·도(주소지 시·군 연접 시·군 산지 포함)에서 30ha 이상 경영(농업법인 300ha) - 100ha 이상(주된 시·군과 연접 시·군의 산지 한정) 경영, 90일 이상 종사,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농업법인 해당 없음)

종류	임산물생산업 (^① 소규모임가· ^② 면적직접지불금)	육림업
	< ^①소규모임가 > ①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 0.5ha 이하 ② 임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 산지 면적 합 1.55ha 미만 ③ 등록신청 연도 직전 계속 영농종사·농촌 거주 3년 이상 ④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 외 종합소득액 2천만원 미만 ⑤ 임가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액 4,500만원 미만 ⑥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시설재배 소득액 3,800만원 미만 * 어느 하나 미충족 시 면적직불금 신청 또는 지급	
지급면적	< ^①소규모임가 > 0.1ha이상~0.5ha이하 < ^②면적직불 > 0.1ha이상~30ha이하(농업법인 5~50ha) *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3ha이상~30ha이하(농업법인 10ha이상~50ha이하) *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지급단가 (ha 당)	< ^①소규모임가 > 120만원(*임가당) < ^②면적직불 > ① 0.1ha이상~2ha이하: 94만원 ② 2ha초과~6ha이하: 82만원 ③ 6ha초과 : 70만원	① 3ha이상~10ha이하: 62만원 ② 10ha초과~20ha이하: 47만원 ③ 20ha초과: 32만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2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합 계				51,176	50,172	56,607	56,308	61,984
임업·산림 공 익직접지불금 (1538-306)	직접지불금 지급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임가 직불금	6,026	766	6,026	857	929
			면적직불금	32,663	39,860	32,663	37,832	41,354
		육림업직불금		8,120	6,175	8,120	8,120	8,381
		직전년도 부족액		—	—	—	—	3,783
	이행정리 및 사업관리	이행점검		3,203	2,218	3,264	3,069	3,174
		사업관리		1,164	1,153	1,230	1,200	1,430
	임업직불금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축비		—	—	5,304	5,230	2,933
		운영비		—	—	—	—	—

*) 지자체 교부액 기준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및 계획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대상면적 (천ha)	지급대상 (천건)	지급액* (백만원)	대상면적 (천ha)	지급대상 (천건)	지급액* (백만원)	대상면적 (천ha)	지급대상 (천건)	지급액 (백만원)
합계	56.8	21	46,889	62.3	20	48,923	67.2	—	54,447
· 임산물생산업 직불제	46.0	20	40,883	48.3	19	40,938	48.1	—	42,283
- 소규모임가 직불금(가구)	0.2	1	763	0.2	1	713	—	1	929
- 면적 직불금(면적)	45.8	19	40,120	48.1	18	40,225	48.1	—	41,354
· 육림업 직불제(면적)	10.8	1	6,006	14.0	1	7,985	14.5	—	8,381
· 직전년도 부족액(면적)	—	—	—	—	—	—	4.6	—	3,783

*) 실지급액 기준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참고자료 2] 2023년도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황('23년말 기준)

(산림청 제출자료)

□ 총면적: 482,271ha(100%)

- 국유림: 344,285ha(71.4%) * 타부처 소관 국유림 1,699ha 포함
- 공유림: 46,773ha(9.7%)
- 사유림: 91,213ha(18.9%)

※ (괄호안 면적): 시·도별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면적

(단위: ha)

관서별	합계	재해방지 보호구역	생활환경 보호구역	경관 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 자원보호 구역
					소계	제1종	제2종	제3종	
합계	482,271	3,024	13	17,794	284,741	90,359	12,744	181,638	176,699
시도계	139,685 (91,213)	2,295 (1,824)	10 (6)	15,227 (12,828)	115,949 (73,551)	75,464 (67,156)	8,234 (6,370)	32,251 (25)	6,304 (3,004)
서울	0	—	—	—	0	—	—	—	—
부산	0	—	—	—	0	—	—	—	—
대구	659 (655)	—	—	—	652 (652)	652 (652)	—	—	7 (3)
인천	8 (3)	—	—	—	0	—	—	—	8 (3)
광주	0	—	—	—	0	—	—	—	—
대전	8 (8)	—	—	—	0	—	—	—	8 (8)
울산	4,403 (4,322)	—	—	81 (81)	4,322 (4,241)	4,322 (4,241)	—	—	—
세종	72 (71)	—	—	16 (16)	55 (55)	55 (55)	—	—	1
경기	12,656 (4,638)	—	—	1,022 (195)	11,434 (4,443)	4,296 (3,960)	484 (483)	6,654	200
강원	14,666 (1,816)	—	—	439 (427)	13,446 (1,386)	1,605 (1,158)	219 (204)	11,622 (24)	781 (3)
충북	12,321 (3,101)	—	—	—	12,320 (3,100)	3,816 (3,099)	—	8,504 (1)	1 (1)
충남	11,874 (10,672)	13 (13)	—	2,512 (2,364)	9,208 (8,274)	8,698 (8,274)	—	510	141 (21)
전북	27,064 (19,772)	641 (542)	—	2,637 (2,277)	23,786 (16,952)	19,409 (16,952)	—	4,377	—

관서별	합계	재해방지 보호구역	생활환경 보호구역	경관 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 자원보호 구역
					소계	제1종	제2종	제3종	
전남	9,867 (7,376)	321 (309)	—	2,068 (2,056)	7,398 (4,964)	756 (740)	6,058 (4,223)	584	80 (47)
경북	25,939 (20,431)	367 (151)	10 (6)	5,290 (4,250)	15,273 (13,113)	13,928 (11,776)	1,345 (1,326)	—	4,999 (2,911)
경남	20,084 (18,288)	789 (748)	—	1,162 (1,161)	18,055 (16,372)	17,927 (16,249)	128 (123)	—	78 (7)
제주	64 (60)	64 (60)	—	—	0	—	—	—	—
산림청계	342,586	829	3	2,567	168,792	14,895	4,510	149,387	170,395
북부	181,923	4	—	187	94,001	1,912	3,498	88,591	87,731
동부	77,315	4	—	44	38,080	60	—	38,020	39,187
남부	40,430	507	3	894	5,123	2,850	48	2,225	33,903
중부	18,973	85	—	280	15,350	2,188	1	13,161	3,258
서부	23,945	229	—	1,162	16,238	7,885	963	7,390	6,316